

의안번호	2206153
의 퇴 인	구자근의원
회 답 일	2025. 1. 21.
추계번호	24A5604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등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억 8,000만원, 2029년 3억 7,0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8억 6,000만원(연평균 3억 7,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안 제5조)	18	18	18	18	18	90	18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	200	—	—	—	—	200	4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 수립 (안 제7조)	—	190	190	190	190	760	152
반도체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안 제9조)	162	162	162	162	162	810	162
합 계	380	370	370	370	370	1,860	372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위원회)	○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3.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관계 부처 규제 일원화 및 인허가 의제 확대 등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 4. 반도체의 설계,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특례 제공 및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 6.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운영·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 － 8.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 － 9.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 10.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산업 지원 특례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재정·행정지원 등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둔(제2항)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업계·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4항)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 및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됨(제5항) ○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6항)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사업자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제7항)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8항)	
2	안 제6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 1.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기본방향 － 2.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3.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 4.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5.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 6.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 7.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반도체산업의 시설투자 또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 8. 반도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 9.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같음(제3항) ○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3	안 제7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의 수립 등)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위원회에 전년도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함(제2항) ○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함(제3항)	의무규정
4	안 제9조 (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 정부는 매년 반도체산업 등에 관한 경제적·산업적·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제1항) ○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5	안 제10조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 1. 글로벌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 2.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성능검증 및 실증센터 구축사업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내 반도체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1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 계의 설치)	○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16조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발 전 등 공급망 안정화에 대 한 지원)	○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하여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발전 등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내용과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8	안 제17조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 정부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3.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 4.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 － 5.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 6.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 7.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 － 8.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재량규정
9	안 제18조(국제협력 등 의 지원)	○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국제적인 연대 형성을 통하여 반도체산업을 위한 통상협력,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교류,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19조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함(제1항) ○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제2호나목¹⁾의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정함(제2항) ○ 제1항에 따라 제2조제2호가목²⁾의 지역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조성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따라야 함(제3항) ○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음(제4항) ○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재정 지원 및 특례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11	안 제20조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 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부담할 수 있음(제1항) － 1.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3. 폐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4. 반도체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 5.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음(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의 투자·운영 등 관련 일정 및 계획을 고려하여야 함(제3항) ○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제4항) ○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21조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관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관의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운영, 반도체산업에 관련된 설비 및 연구시설 투자, 산업기반시설 투자, 연구개발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22조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 1.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 3.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과 주택·의료시설·교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4. 반도체클러스터의 체계적 개발 및 운영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14	안 제24조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제조 등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1항) ○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제2항) － 1. 반도체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반도체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 4. 신규 인력 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항 － 5. 퇴직근로자 등 반도체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 6. 반도체 공정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7.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5	안 제25조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16	안 제26조 (반도체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 정부는 우수한 반도체 교육환경 조성 및 인력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특성화대학원, 반도체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반도체특성화대학등” 이라고 한다)를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2. 「한국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3. 「광주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5. 「울산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의 운영과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 정부는 반도체산업별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 중 반도체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7	안 제27조 (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각종 세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8	안 제34조 (고용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9	안 제35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 정부는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음(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음(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음(제3항) ○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제4항) ○ 정부는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5항) ○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재량규정

1) 2) 안 제2조(정의)

2. “반도체클러스터”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연구·판매·지원 등이 촉진되도록 관련 기관과 시설들이 모인 다음 각 목의 단지 중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입지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다.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	—
2	안 제6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의 수립 등)	○	—
3	안 제7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 의 수립 등)	○	—
4	안 제9조 (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	—
5	안 제10조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 진)	×	○ 관련 현행 사업 존재 ([참고자료] 참조) - 다만, 제정안 시행에 따라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사업의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의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6	안 제11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 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	○ 안 제11조제1항은 반도체산업 특별회계의 조성을 규정하면서 안 제11조제2항에서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추가되는 특별회계 세출의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추 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7	안 제16조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발전 등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지원)	×	○ 관련 현행 사업 존재 ([참고자료] 참조) - 다만, 제정안 시행에 따라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사업의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의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8	안 제17조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	
9	안 제18조 (국제협력 등의 지원)	×	
10	안 제19조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	
11	안 제20조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	○ 관련 현행 사업 존재 ([참고자료] 참조) - 다만, 제정안 시행에 따라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사업의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의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12	안 제21조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관 지원)	×	
13	안 제22조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	
14	안 제24조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	
15	안 제25조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 정부가 특성화대학 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 특성화대학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하므로 향후 지정될 특성화대학 등을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16	안 제26조 (반도체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	
17	안 제27조 (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	
18	안 제34조 (고용에 대한 지원)	×	○ 관련 현행 사업 존재 ([참고자료] 참조) - 다만, 제정안 시행에 따라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사업의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의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
19	안 제35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 제1조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안 제5조)

- 비용추계 대상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 위원회 설치 비용은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금액으로 함
 - 민간위원 수와 회의 개최 횟수를 곱한 값에 민간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함
 - 민간위원의 수는 15명, 회의 개최 횟수는 연 4회로 가정
 - － 안 제5조제2항과 제7조제3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인 대통령과 간사위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2항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2호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업계·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위원의 정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3명인 것으로 간주하여 민간위원의 수는 15명으로 가정함
 - 민간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300,000원³⁾으로 가정
 - － 1일당 최대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회의 운영비는 회의자료 배부, 인쇄물 제작 등에 관한 비용으로 위원 1인당 5만원으로 가정함

3)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만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편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검토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본 추계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1회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에 따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2]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안 제5조)	18	18	18	18	18	90	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 비용추계 대상은 안 제6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연구용역비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참조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비용을 추계함
 - 유사 연구용역 사례의 연구용역비 평균인 1억 9,250만원을 참조하고 5년 주기를 고려하여 법 시행 첫해인 2025년에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유사한 연구용역 사례

연구제목	발주처	실시년도	예산(백만원)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23	140
제3차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20	80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환경부	2020	460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추진전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7	90
평 균			192.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 제정안에 따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4] 제정안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200	-	-	-	-	200	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7조)

- 제정안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7억 6,000만원(연평균 1억 5,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기본계획 수립 다음 해인 2026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실행계획 수립 비용은 유사사례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균형발전지원(3362-305)사업의 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지원 금액⁴⁾을 준용한 금액(연평균 190백만원)을 활용하며 추계기간 동안 소요 금액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표 5] 제정안의 실행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안 제7조)	-	190	190	190	190	760	1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반도체 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안 제9조)

- 비용추계 대상은 안 제9조 따른 “반도체 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비용은 실태 조사용역비로 함

4) 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지원 사업의 최근 3년('23-'25) 예산은 190백만원으로 동일

-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사 실태조사용역 사례를 참조하여 반도체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따른 비용을 추계함
- 유사 연구용역 사례인 ‘항공제조산업 실태조사’⁵⁾⁶⁾의 2023년 결산 기준 연구용역비를 참조하여 추계기간 동안 매년 1억 6,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에 따라 반도체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8억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6] 반도체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반도체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안 제9조)	162	162	162	162	162	810	16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5) 세부사업 코드: 3551-390

6)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 대한 실태조사용역을 통해 국내 항공제조산업 기업체의 일반현황 및 생산·수주·고용·투자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항공제조산업 정부정책 및 장단기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서영빈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서영빈	02-6788-4653	ybin@assembly.go.kr

[참고자료]

반도체산업 관련 세부사업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코드)	재원	사업 내용	2025예산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연대협력지원(R&D) (3171-419)	일반회계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구성하는 첨단전략산업 관련 전·후방산업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지원	6,300
반도체인프라활용 현장인력양성 (3161-319)	일반회계	○ 대학 내 반도체 인프라를 활용한 반도체 분야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및 취준생 교육을 통한 반도체 현장인력 양성	4,762
시스템반도체설계 실무인력양성 (3161-323)	일반회계	○ 시스템반도체 설계교육센터 운영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반도체 설계 실무인력 양성	2,960
반도체아카데미구축 (3161-329)	일반회계	○ 반도체 산업계 수요의 맞춤형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센터인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	4,710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 인력양성(R&D) (3161-416)	일반회계	○ 대학·연구기관 석·박사 인력을 통해 기업 수요형 R&D 과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초격차 핵심기술개발 및 석박사 고급 인력양성	16,529
PIM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R&D) (3561-302)	일반회계	○ DRAM 제조 공정 기술 고도화, PIM용 차세대 상용메모리(MRAM, PRAM) 아키 텍처 및 공정·소재·장비 상용화 기술개발 을 통한 PIM용 메모리 기술 고도화	17,900
시장선도를위한 한국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R&D) (3561-305)	일반회계	○ 주력산업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필요 한 핵심 센서 기술개발과 센서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30,239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설계,제조)(R&D) (3561-307)	일반회계	○ 산업체·학교·연구소의 4차 산업혁명시대 에 부합하는 차세대 반도체 설계 핵심기 술 R&D 지원을 통해 新시장 선점 및 제조기반기술 확보로 국산화율 제고	46,310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 육성기술개발(R&D) (3561-311)	일반회계	○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 육성	3,328

세부사업 (코드)	재원	사업 내용	2025예산
화합물소재기반 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 (R&D) (3561-317)	일반회계	○ 전력시스템 수요에 대응 가능한 밸류체인형 상용화 기술·미래 선도형 기술·핵심제조기술 개발을 산·학·연에 지원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전력 효율 향상에 기여	6,654
신시장창출을위한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R&D) (3561-418)	일반회계	○ 수요 연계형 과제 추진체계 구축과 5代 신산업분야(자동차, 에너지, 도심항공, 헬스케어, AI스마트홈) 품목선정·지원을 통한 新산업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차세대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	10,500
화합물전력반도체고도화 기술개발(R&D) (3561-422)	일반회계	○ 전력시스템 수요에 대응 가능한 밸류체인형 상용화 기술·미래 선도형 기술·핵심제조기술 개발을 산·학·연에 지원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전력 효율 향상에 기여	21,170
반도체디스플레이 온실가스감축공정기술개발 (R&D) (6431-534)	기후기금	○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온실가스의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GWP 신규물질 개발 및 실증연구 지원	2,864
시스템반도체기업 성장환경조성 (3171-304)	일반회계	○ 팹리스기업 창업초기 인프라지원, 설계환경지원, 시제품(MPW) 제작지원을 통한 설계 인프라 제공	8,670
시스템반도체 IPBank 플랫폼 구축 (3171-315)	일반회계	○ 단기수요대응, 핵심IP확보, IP선순환 생태계시스템구축을 통한 반도체 국가전략자산 확보 및 플랫폼화	6,212
시스템반도체 수요연계 온라인플랫폼지원사업 (3171-372)	일반회계	○ 수요기업의 니즈와 공급기업의 기술을 온라인 플랫폼(COMPASS)에 등재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매칭된 기업의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11,150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구축 (3171-424)	일반회계	○ 해외 선도기업과의 기술격차 완화 및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를 구축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양산단계에서의 실증 지원체계 구축	2,400
시스템반도체검증지원센터 구축 (3171-432)	일반회계	○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지원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해 팹리스, IP 기업의 반도체 설계와 성능 검증을 위한 기술 및 인력 지원	2,400

세부사업 (코드)	재원	사업 내용	2025예산
반도체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 (3171-435)	일반회계	○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분석 인프라 및 센터 구축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2,000
산업현장맞춤형온디바이스AI 반도체기술개발 (R&D)(3561-322)	일반회계	○ 로봇, 가전, 기계, 에너지 등 제조산업을 대상으로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설계 및 수요현장 실증 기술 개발 지원	4,320
SDV용AI가속기반도체기술개 발사업(R&D) (3551-355)	일반회계	○ 탑티어 기술력 보유 해외사와의 협력 개 발을 통한 글로벌 1위 동등 이상 수준의 자율주행 핵심 반도체(차량 AI가속기) 국 산화 개발 등	4,250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 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 (3171-434)	일반회계	○ 미래차 전환에 따른 시스템반도체 적용 및 신규부품 수요 증가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와 전장부품에 대한 전주기 통합 지원	3,240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개발 사업 (3561-432)	일반회계	○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핵심 기술의 선제 적 개발과 글로벌 패키징 소부장 기술 내재화 및 글로벌 기술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 R&D 등 사업 추진	17,800
미래차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구축 (3171-434)	일반회계	○ 미래자동차 전환에 따른 시스템반도체 및 신규부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차량용 반도체와 전장부품을 통합 지원할 One-Stop 검증센터 구축	3,240

주: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소관 세부사업 기준